



韓國科學技術센터 會館建立 期成會 要覽

1. 創立 趣旨

祖國의 近代化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各界 各層의 均衡있는 發展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國內 實情을 살펴보면 藝術, 教育, 體育, 宗教, 新聞, 勞動, 女性 등 各界에서는 일찌기 會館을 마련하고 各其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데 반하여 現代國家發展上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여야 할 우리 科學技術界가 아직도 會館하나 마련하지 못함으로 因하여 그 活動이 자못 低調함을 免치 못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觀點에서 全國 130餘個 科學技術團體를 網羅하고 있는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以下 科總이라 稱함)에서는 數年 前부터 政府當局의 後援下에 科學技術센터 會館의 建立를 爲한 垆地를 物色한 結果 昨年 서울特別市 當局의 協助로 東서울 永東地區 要地에 2,500坪의 垆地를 確保하는 한편 貧弱한 科學技術者들 自體의 募金으로 昨年 10月 着工하여 現在 地下一層 地上 三層까지 그 骨組工事を 거의 完工할 段階에 이르고 있습니다.

本會館이 竣工되면 落後된 國內 科學技術의 振興을 爲한 年次的인 多彩로운 活動으로 祖國 近代化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同時에 總 10層의 本 建物이 堂堂한 모습은 唯獨 科學技術界 뿐만 아니라 우리 全國民이 後世에 까지 길이 남길 수 있는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遺産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民族의 事業은 官民合同下에 汎國民의으로 推進하여야 하겠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훌륭하게 成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本期成會는 以上과 같은 趣旨에 依하여 科總이 着工한 韓國科學技術센터 會館의 竣工을 爲하여 財政의으로 支援함을 目的으로 創立되었으니 江湖 諸賢의 熱誠의인 協助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2. 建立 効果

- 1). 祖國의 近代化를 爲한 國內 科學技術界의 總力發揮
- 2). 科學技術關係 130餘 學會의 共同入住로 因한 研究活動의 効率化 및 시스템化
- 3). 内外 科學技術에 關한 綜合的 調查 研究센터의 設置
- 4). 科學技術者의 開發能力 및 創意性의 向上을 爲한 트레이닝센터의 設置
- 5). 產業界와 科學技術界間의 紐帶強化와 情報交流 및 國際學術會議 開催
- 6). 諸般技術 및 經營問題에 關한 各種 세미나, 學術發表會 講演會의 開催 및 刊行物 出版

- 7). 科學新聞, 科學放送 等 科學技術 메스컴센터의 設置
- 8). 科學技術에 關한 컴퓨터 및 教育機材 開發센터의 設置
- 9). 内外 新技術의 紹介, 科學器材 및 優良工產品의 展示
- 10). 國內 企業체에 對한 技術診斷 및 經營指導
- 11). 새마을運動 等 地域社會 開發에 對한 奉仕
- 12). 國民生活의 科學化 및 一般 科學精神의 昂揚
- 13). 科學技術者의 福利增進
- 14). 其他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民間活動의 總本山의 人 役割 擔當

3. 建立規模

- 1). 地 址 位置· 서울特別市 城東區 驛三洞 山75-561
坪數 2,500坪
- 2). 建 物 地下1층, 地上9층, 計 10층
延建 約 2,000坪

3). 所要資金	建物工事費	₩	246,000,000
	附帶施設費	₩	35,000,000
	合計	₩	281,000,000

4. 資金調達計劃(單位元)

区分	年度別	1972	1973	1974	合計
政府補助金		—	60,000,000	40,000,000	100,000,000
各學會入住金					50,000,000
期成會收入		29,000,000	50,000,000	52,000,000	131,000,000
合計		29,000,000			281,000,000

5. 會員募集要綱

1) 會員의 種別 및 會費(單位元)

種 別	會 費
普通會員	年 1,000
正會員	年 10,000
特別會員	一時 100,000
團體會員	一時 100,000 (1座當)
有功會員	一時 1,000,000,000 以上

備考: 會費는 分納할 수 있음.

2). 會員의 特典

- ㄱ. 센터의 各種 施設에 對한 使用料, 其他 料金の 割引 또는 免除
- ㄴ. 科總이 發刊하는 月刊紙와 各種 刊行物의 無償 配付
- ㄷ. 科總이 主催하는 세미나 等 各種 行事に 對한 參加金の 割引 또는 免除
- ㄹ. 科總이 行하는 企業診斷 및 技術指導에 對한 料金の 割引 또는 免除
- ㅁ. 會員마크의 無償 配付
- ㅂ. 會員名을 建物壁체에 刻印하여 永久保存

定 款

第1章 名稱 및 所在地

第1條(名稱) 本會는 韓國科學技術센터 會館 建立 期成會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期成會는 서울特別市 內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以下 科總이라 稱 한다) 事務所內에 두며 主要都市에 支部를 들 수 있다.

第2章 目的 및 事業

第3條(目的) 1: 本會는 科總이 着工한 韓國科學技術센터會館의 竣工을 爲하여 財政的으로 支援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 第4條(事業) 1. 韓國科學技術센터會館 建立에 對한 財政的 支援事業
2.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紐帶強化를 爲한 事業
3. 産學協同에 關한 事業
4. 其他 센터會館 建立에 關聯된 諸事業

第3章 會 員

第5條(會員 및 會費)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5種으로 한다.

普通會員: 科總에 加入된 學會 및 團體의 構成員 또는 一般 科學技術人으로서 年 會費 1,000원의 會費를 納付한 者로 한다.

正會員: 本會의 事業目的에 贊同하는 人士로서 年 會費 10,000원의 會費를 納付한 者로 한다.

特別會費: 特別會員은 本會의 事業目的에 贊同하는 人士로서 一時 會費 100,000원의 會費를 納付한 者로 한다.

團體會員: 本會의 事業目的에 贊同하는 會社, 法人, 機關 또는 團體로서 一座當 一時 會費 100,000원의 會費를 一座 以上 納付한 者로 한다.

有功會員: 本會의 事業目的에 贊同하는 個人 또는 前項의 團體로서 一時 會費 1,000,000원 以上の 會費를 納付한 者로 한다.

團體로 加入한 會員은 納付會員 100,000원 當 1人式의 所屬 任職員을 特別會員으로 登錄할 수 있으며 其中 1人을 代表者로 한다.

第6條(會費의 分納) 會費는 센터會館 工事進行에 支障이 없는 限度內에서 分納할 수 있다.

第7條(會員의 特權) 會員에게는 다음의 特權을 賦與한다.

1. 科總에서 發刊되는 刊行物 購讀料의 割引 또는 免除

2. 센터 施設物 利用에 對한 料金 및 使用料의 割引 또는 免除

3. 科總에서 開催하는 學術講演 세미나 等 行 事에 對한 參加金의 割引 또는 免除

4. 科總이 行하는 企業診斷 및 技術指導에 對한 料金의 割引 또는 免除

本條에 關한 細則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8條(會費의 返還) 既納의 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第9條(資格喪失) 會員은 다음 事由에 依하여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脫退 2. 死亡 3. 除名 4. 解散

第10條(除名) 會費를 未納하거나 本會에 對하여 背信行爲를 하였다고 認定될 時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第4章 會 任 員

第11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若干名 3. 理事長 1名 4. 理事 若干名 5. 常任理事 11名 6. 監事 3名 以內 7. 事務局長 1名

第12條(任員의 選出) 會長, 副會長, 理事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常任理事 및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會長, 副會長, 理事長 및 常任理事는 當然 職理事가 되며 事務局長 및 科總 事務總長은 當然 職理事 및 常任理事가 된다.

第13條(任員의 任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有故時에 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理事長은 本會 業務를 總括하며 常務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의 重要한 業務를 審議 決定한다.

常任理事는 常任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 業務執行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業務를 執行한다.

第14條(理事會의 成員 및 議決)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는 在籍人員의 半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5條(名譽會長, 顧問, 評議員) 本會는 會長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學識과 德望이 높은 이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名譽會長, 顧問 및 評議員 各 若干名을 推戴 또는 委囑할 수 있다.

第16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再任도 無妨하다.

但 補缺로 因한 任員의 任期는 前 任期의 任期 終了時까지로 한다.

第17條(引繼) 任員은 任期滿了 後에도 後繼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5章 委員會

第18條(委員會의 設置) 本會는 業務 執行의 必要에 따라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9條(委員會 規程) 委員會의 設置 및 委員會에 必要한 事項은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長이 定한다.

第6章 總 會

第20條(定期總會) 定期總會는 每 事業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開催한다.

第21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다음에 依하여 開催한다.

1. 會長이 必要로 할 때
2. 理事會가 必要로 할 때
3. 決議權을 가진 會員의 1/3 以上이 會議의 目的 事項을 提示한 書面으로 會長에게 請求하였을 때

第22條(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
2. 每 事業年度의 業務報告 및 決算
3. 任員의 選出 4. 會則의 變更
5. 其他 重要事項

第23條(總會의 議決權) 總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會員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2. 特別會員 3. 贊助會員
4. 有功會員

第24條(總會의 成立) 總會는 議決權 行使會員의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하며 議決은 出席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되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25條(議決權의 行使) 總會의 議決權의 行使는 1名 1票로 한다.

第26條(會議錄) 總會, 理事會, 및 常任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 및 出席會員 2名이 署名 捺印하며 이를 保存한다.

第7章 資產 및 會計

第27條(資產)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呼 訴 文

祖國 科學技術의 振興에 致念하시와 本會가 主管하는 韓國科學技術센터 會館建立에 積極 協助하여 주시는 江湖 諸賢에게 眞心으로 感謝의 뜻을表 하나이다.

本센터 會館의 建立工事を 資金의 全部가 마련되지 못한채 着工한 것은 우리가 後孫에게 길이남겨야 할 本建物は 꼭 建立되어야만 한다는 一念下에서 또 自助者天助의 理念에서 우선 本會 산학會와 一部 有志들만의 誠金으로 工事を 始作한 것이오니 넓이 諒察하시와 今後 加一層의 指導 勸導과 協助를 나려 주시기 바라나이다.

특히 國內 數十萬 科學技術者 여러분께서는 한 匣의 담배를 節約하는 뜻으로 1人當 最小限 壹千 원식을 회사하시는 精誠을 발휘하시와 한분도 빠짐없이 最小限 普通會員으로 本期成會에 加入하여 주시옵기 삼가 呼訴하는 바입니다.

1972年 7月 日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 允 基

第28條(規程) 本會 運營에 關한 內規는 別途로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9條 本會의 事業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第8章 事 務 局

第30條(組織) 本會의 事務遂行을 爲하여 事務局을 둔다. 事務局에 必要한 規程은 會長이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別途로 이를 定한다.

第9章 附 則

第31條(解散) 本會는 센터會館 竣工과 더불어 發展의 解消를 함과 同時에 第7條에 依하여 本會員에 既히 賦當된 諸般 特典은 科總이 이를 繼續 賦與한다.

第32條(施行) 本會則은 創立總會를 通過한 後 科總 會長의 認准을 얻은 날로부터 施行한다.